

●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- 35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  
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14일

금융위원회위원장

- 다 음 -

1. 상 호 :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(주)

2. 인가업무

가. 11-112-2 투자매매업(인수업 제외) 사채권

나. 12-112-2 투자매매업(인수업만 해당) 사채권

3. 인가조건

가. 12-112-2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

(1)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(만기가 3개월  
이내인 경우에 한함)의 인수

(2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2항 각 호(제2호부터 제6호는 제외)의  
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권(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함)의 인수

4. 인가일 : 2017. 2. 8.

※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